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6월 19일, 최민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6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8.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8.)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24.) 상정·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최민희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정부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태의 위험성과 2차 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경보·예보를 실시하지 않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극적 대응과 미흡한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 확산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와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7항, 제48조의7, 제76조제1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침해사고 ‘통지’의 경우, 통지의 대상이 전체 국민인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만약 통지의 대상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로 한정한다면 통지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보다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벌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무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균형을 잃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를 다른 위반행위의 경우와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